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美 조선·해운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경제안보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경제안보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공급망, 미국] 美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2024년) 및 Fact Sheet 발표

[조선, 미국] 美 의회 조선업 관련 법안 발의 동향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최용호 전문관 · 북미경제외교과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01

1. 배경
2. SHIPS Act의 주요 내용
3. 분석 및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황지현 전문관 · 이재원 선임전문관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15

1. 개요
2. 주요 내용
3. 전망 및 시사점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이재원 선임전문관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20

1. 개요
2. 전통적인 미국 외교정책(America Second)의 역사
3.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4. ITIF 보고서의 제언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공급망, 미국] 美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2024년) 및 Fact Sheet 발표

[조선, 미국] 美 의회 조선업 관련 법안 발의 동향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 (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전문관 · 북미경제외교과

요약

■ 배경

-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美 조선업 부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美 의회**,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 초당적 발의(’24.12.19)

* <경제안보 Review 24-8, 최용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참조

** (상원) M.Kelly(민주/애리조나), T.Young(공화/인디애나) (하원) T.Kelly(공화/미시시피), J.Garamendi(민주/캘리포니아)

*** Shipbuilding and Harbor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and Security 또는 SHIPS for America Act (이하, SHIPS Act)

- 관련 입법 노력이 제119대 의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美 新행정부도 한미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표명한바*, 동 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美 조선·해운 산업 강화를 지속 주장했던 Waltz(안보보좌관 내정자) 및 Rubio(국무장관 내정자), 新행정부 요직 지명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미 조선 분야 협력 가능성 언급

■ SHIPS Act의 주요 내용

- (제도 기반 수립) 백악관 내 해양안보보좌관 등을 신설하여 정책을 총괄하고, 법 이행을 위한 해양안보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신설
- (美 해상수송 역량 강화) 전시 필수 경제활동 보장, 외국의 공급망 강압 대비 등을 위한 美 수송역량 강화 위해 ▲역량 점검 ▲구체 목표 설정 ▲동맹국·전략 파트너와의 협력 방안 모색 등 추진
- (전략적 상업 선단* 창설) 美 국적** 국제무역선으로 구성된 선단(10년 내 최대 250척 확보)을 창설, 평시에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군수물자 수송 등에 즉각 투입

* SCF: Strategic Commercial Fleet / 상세 요건 본문 참조

** Vessels of the United States: 美 국내법(46 USC 116)으로 정의

- (해외우려국(기관) 대응) ▲中 상품 수입 시 일정 비율 美 선박 사용 의무화 ▲美 입항 해외 우려국(기관) 선박에 대한 통세제·입항료 면제 중단 ▲中 물류 플랫폼에 대한 위협 평가 ▲해외우려국(기관)에서 정비를 받은 美 선박에 대한 종가세 인상 등 추진
- (美 선박 우대) ▲美 국적선을 통한 화물 운송에 특혜 제공 검토 ▲정부 화물의 美 국적선 운반 원칙 ▲에너지 수출 시 일정 비율 이상 美 제조 선박 활용 의무화 등
- (美 산업 기반 조성) ▲미국 내 선박 건조 및 조선소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동맹국과의 해양 분야 인력 교류 프로그램 수립 등

■ 분석 및 시사점

- (총론) ▲전략적 상업 선단 참여 ▲美 조선산업 투자 혜택 ▲해상 인프라 접근 및 선박 정비 관련 협력 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요인에 주목
 - 다만, SHIPS Act가 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적 방향(美 리쇼어링 유도, 美 선박 사용 유도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도전 요소
 - 對中 견제 요소(중국산 對美 수입품의 美 선박 선적 의무화, 해외우려국(기관) 관련 선박 美 항구 입항 시 세금 면제 불가 등)가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 주시 필요
- (전략적 상업 선단) 해외우려국(기관)과 관련이 없다면 외국 건조 선박도 참여 가능
 - 해외우려국(기관) 선박이 배제되고 동시에 새로운 선박 건조 수요가 창출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단기적으로는 구매·발주 증가 등 기회로 작용 가능
 - 다만, 상세 요건(美 국적선 지위 취득 등) 충족 필요
- (美 조선업 투자 지원)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단기적으로 對美 투자 증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규모 고려 시 실질적인 대미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혜택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
- (美 해상수송 역량 강화) 행정부가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美 행정부와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美 국적 상선의 해외 정비에 인센티브 부여 ▲국제 해양 인프라 접근 보장 중시 등 요소에 주목하여 협력 기회 발굴 필요

1. 배경

- (조선·해운 분야 美 국내법 체계) 미국은 그간 조선·해운 산업 및 인프라가 美 국가안보 및 해군력의 근간이라는 인식하에 ‘존스 법(Jones Act)’으로 대표되는 국내법 체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지원

법/정책	내용
Jones Act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 46 U.S.C. 883)	미국 내 상품 수송은 ▲美 국적 ▲美 건조 ▲최소 75%가 美 소유 그리고 美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만 가능 - 국가안보 및 군사 작전상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인정
Construction Differential Subsidy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36, 46 U.S.C. 1151-1162)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 비용이 외국 건조 비용보다 높을 때, 최대 50%까지 연방정부가 차액 지원
Military Cargo Preference Act (10 U.S.C. 2631)	군대 조달 물품은 美 소유 선박에 의해서만 수송 가능 -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인정
Byrnes-Tollefson Amendment (14 U.S.C. 1151, 10 U.S.C. 8679)	미국 군함이나 해당 선박의 주요 구성물은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 불가 - 국가안보 목적에 따른 일부 예외 인정
Maintenance of Naval Vessels (10 U.S.C. 8680)	美 군함은 미국 이외의 조선소에서 수리, 유지보수 불가 - (예외) ▲항해 중 수리, ▲공격에 의한 손상 수리 ▲21일 이내의 시정 적·예방적 보수
Maritime Security Program Tanker Security Program (Maritime Security Act of 1996, 46 U.S.C. Ch. 531)	전쟁 등 유사시 활용될 수 있는 미국 소유 민간 선박들에 대해 정부 가 연간 수당 지급

- 그러나 이러한 보호책이 ▲세계 시장에서 美 업계 경쟁력 약화 ▲동맹·우방국과의 조선·해운 분야 협력 저해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존재

- (美 조선·해운 산업 부흥 담론 등장) 美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쇠퇴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조선·해운 산업 부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지속 등장*

* <경제안보 Review 24-8, 최용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참조

- (이해관계자) 전미철강노조 등 주요 노조는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미국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美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 청원('24.3.12)
- (청원 내용) ▲중국 정책의 불공정성, ▲미국 해양 산업의 쇠퇴가 가져오는 안보 위협, ▲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 등

- (행정부) 美 백악관은 「철강·조선 산업 보호조치」*에서 中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24.4.17)

*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 USTR은 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후 1년간 경제적 피해 조사 진행 중 → 피해 확인 시 구체적인 구제 방안 검토 예정
- 한편, 美 新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조선·해운 분야 협력 가능성 언급

트럼프 당선인 조선 협력 관련 주요 발언

-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 필요”(‘24.11.7, 한미 정상 간 통화)
-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동맹국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dock)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될 때까지 주문해야 할 것”(‘25.1.6, 라디오 인터뷰)

- (의회) Mike Waltz 등 의원*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美中 전략경쟁 하 美 산업 경쟁력 약화 현상에 우려를 표출하였으며, ▲미국의 조선·해운 산업 역량 강화 ▲동맹국과의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 지속 주장

* M.Waltz(공화/플로리다/新정부 안보보좌관 내정자), M. Rubio(공화/플로리다/新정부 국무부 장관 내정자), M.Kelly(민주/애리조나), T.Young(공화/인디애나), T.Kelly(공화/미시시피), J.Garamendi(민주/캘리포니아) 등

- 여러 의원은 서한을 통해 행정부가 조선·해운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24.4.10)하는 한편, 美 해양산업을 보호하고 中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

* Ocean Shipping Reform Implementation Act, Energizing American Shipbuilding Act, Rebuilding the United States-Flag International Fleet Act. Federal Ship Financing Improvement Act 등

- Waltz, Rubio, Garamendi 의원은 美 해양 전략의 목표와 조선업 부흥 방안 등을 담은 「국가 해양 전략을 위한 의회 지침」* 발표('24.4.30)

* 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Reversing the Decline of America's Maritime Power

- Kelly, Waltz 의원은 美 해양력 재건을 주제로 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美 조선·해운 산업 쇠퇴로 인한 안보 위협을 강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노력 예고('24.9월)

■ 美 의회 양당 의원 4명*,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 발의(’24.12.19)

* (상원) M.Kelly(민주/애리조나), T.Young(공화/인디애나) (하원) T.Kelly(공화/미시시피), J.Garamendi(민주/캘리포니아)
** Shipbuilding and Harbor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and Security 또는 SHIPS for America Act(이하, SHIPS Act)

-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美 조선·해운 산업 부흥 목적의 포괄적 지원 법안 / 관련 입법 노력이 제119대 의회(2025년 1월 개원)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Waltz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동 법안 작성 주도 / Rubio 국무장관 내정자도 관심 大

2. SHIPS Act의 주요 내용

■ 구성

- SHIPS Act는 조선·해운 산업 지원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함께 포함된 총 343쪽짜리 종합 패키지 법안이며, 의회의 인식, 용어 정의 외 7개 부분*으로 구성

* (Title I)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Title II) Maritime Security Trust Fund, (Title III) Sealift Capability, (Title IV) Vessels of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Commerce, (Title V) Shipbuilding, (Title VI) Workforce Development, (Title VII) Amendments to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 본 보고서는 이 중 경제안보 및 한미 조선·해운 분야 협력 관련 내용 중심으로 정리

■ (제도 기반 수립) 백악관 내 해양안보보좌관 등을 신설하여 정책을 총괄하고, 법 이행을 위한 해양안보신탁기금 신설

- (총괄 기관) 백악관 내 ▲해양안보보좌관(Maritime Security Advisor) 및 ▲해양안보위원회(Maritime Security Board)를 신설하여 국가해양전략(National Maritime Strategy) 수립 등 정책 조정·총괄

- (해양안보보좌관) ▲해양안보위원회의 의장 ▲국가해양전략 수립·이행 등 정책 조정 ▲해양산업·조선업·선박 수리 관련 의제에 대한 대통령 수석보좌관 등 역할 수행

- (해양안보위원회)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는 매년 美 선박의 무역 경쟁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해양안보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국가해양전략 수립에 활용

- (기금) 법 이행을 위한 해양안보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신설

- (수입) ▲국제 무역 선박에 대한 세금·비용·벌금 ▲일반·특별 톤세제(tonnage tax) ▲입항료(light money) ▲제1차('18.6월) 301조 對中 관세 등

■ (美 해상수송 역량 강화) 전시 필수 경제활동 보장, 국가안보 위협 대응, 외국의 공급망 강압 대비 등을 위한 美 수송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역량 점검 ▲구체 목표 설정 ▲동맹국·전략 파트너와의 협력 방안 모색 등 추진

- **(목표 설정)** 해양안보위원회는 확보 가능한 해양안보선단, 해저케이블안보선단, 유조선안보선단, 전략적상업선단(Strategic Commercial Fleet, SCF)*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목표를 매년 설정
 - * 본 법안의 여러 프로그램 중 전략적상업선단(SCF)의 경우, 아래에서 별도로 상세 요건 검토
- 동시에 미국 국내 선박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 전략 수립
- **(수송용 선박 가용성 보장)** 해양청장(Maritime Administer)은 국방장관과의 공조를 통해 전시 및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수송용 선박의 가용성을 다음 우선순위대로 보장
 - ① 美 국적 상선(commercial vessels of the United States) ②미국 정부 소유·운영 선박
 - ③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 선박(vessels of countries that are defense treaty allies of the United States) ④미국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의 선박
-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해양청장은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 국가와의 국제적 합의 체결 등 협력 기회를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
 - (목표) ▲동맹국 및 전략 파트너 국가의 전시 수송 필요사항 충족 ▲위기 및 전시 상황에서의 미국 전략적 수송역량 강화 ▲미국,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 국가의 해양 산업 지원(support the maritime industrie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treaty allies and strategic partners)
- **(美 역량 점검)** 교통장관 및 국방장관은 전략적 수송을 제공하기 위한 미국 조선산업의 선박 건조·유지·보수 역량이 평시 및 전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 (점검 내용) ▲핵심 조성 인프라 ▲핵심공급망 ▲핵심 수리 부품 관련 개선 방안 및 동맹·전략 파트너 국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및 모범 사례
 - (기타) 이외에도 행정부는 ▲군사용 목적의 해상수송 ▲전략적 해상수요 관련 역량 및 수요 등을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
- **(국제 해양 인프라에 대한 접근 보장)** 2026.3.1. 이후 국무장관은 다음의 사안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
 - 국제 해양 교통 인프라(항구, 항만, 수로 등)에 대한 접근을 위해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 간에 체결된 합의(arrangements and agreements)
 - 위기 또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해상수송 역량 증대를 위해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 간 체결된 합의 및 보장(assurances, arrangements and agreements)
- **(美 선박 특혜 제공 방안 검토)** 2025.3.1.까지 교통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외 무역에 활용되는 美 국적 선박(vessels of the United States)*에 대한 특혜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
 - * Vessels of the United States: 美 국내법(46 USC 116)으로 정의
- 美 국적 선박을 통해 물품을 수송하는 데 있어 동맹·전략 파트너 국가를 포함하여 민간 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안 등

■ (전략적 상업 선단*) 美 국적 국제무역선으로 구성된 전략적 상업 선단 창설

* Strategic Commercial Fleet(이하, SCF)

- (취지 및 목표) 현재 약 80척에 불과한 美 국적 국제무역선을 늘려서 평시에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비상시엔 군수물자 수송 등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상업 선단(SCF)’을 창설, 최대 250척 확보
- 미국은 200척 미만의 외항 선박을 보유 중이나, 中은 등록된 것만 5,500척 보유
- (방식 및 요건) 일정한 조건의 국내외 선박①에 대한 입찰②을 받아 선정③하고, 각종 인센티브 및 ‘중간 목표’ 등을 포함한 계약④에 따라 운영

전략적 상업 선단(SCF) 상세 요건

① (선박 조건) 아래 모든 조건 충족 필요

- (국적) 美 국적 / 외국 국적의 경우 ▲SCF 포함시 美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SCF 계약 발효시 美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 (건조) 美內 건조
- 단, 외국 건조 선박도 ▲연령 14년 이하 ▲해외우려국*(또는 해외우려기관, FEOC)과 무관한 경우 (FEOC 소유▲운영▲건조 또는 등록(SCF 참여 3년 이내) 시 제외) 적격

*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 (종류) ▲벌크 운반선 ▲유조선 ▲로로선(Roll-on/Roll-off) ▲컨테이너선 ▲LNG선 ▲다목적선 ▲해저케이블선 ▲중량물(heavy-lift) 운반선에 국한

※ 단, 상기 외에도 미측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유형의 선박도 포함 가능

- (용도) 국제무역(foreign commerce)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
- (추가 요건) ▲전시 또는 비상시 국방·군사 용도로 사용 적합(국방부에서 판단) ▲상업적 운용 가능 ▲선원 교육기관용 별도 훈련 공간 확보 등
- (소유·운영자) SCF 계약에 따른 운영 기간 동안 ▲美 국적자 소유▲운영 또는 ▲美 국적자 소유 + 적격자 용선 또는 ▲국방 계약자 소유·운영 등

② (입찰) 연방관보로 모집 선박 수·조건 공고 후 30일 이상 기간 동안 접수

- (모집 선박 수) 법 발효 후 ▲2년 후부터는 매년 10척 이상, ▲5년 후부터는 매년 20척 이상 선발 필요 / 단, 최대 250척으로 유지
- (입찰 참여 주체) ▲①조건 충족 선박 소유/운영자 또는 ▲입찰팀(①조건 충족 선박 소유/운영자, 미국 내 조선소, FEOC 아닌 여타 법인 모두 포함 필요)

- (참여 내용) ㉠미국 내 건조 예정인 선박 또는 ㉡적격 외국 건조 선박 참여를 신청하면서 ㉢SCF 참여에 따른 비용 보전 제안 가능
- (잠정 선박) 美內 건조 예정 선박으로 참여 시에는 동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만 외국 건조 ‘잠정 선박’을 SCF에 포함하는 방안 제안 가능
- (외국 건조 선박) ①조건 충족 외국 건조 선박은 2029.10월까지 참여 가능 / 단, 2029년 이후에도 ▲상기 ‘잠정 선박’의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성 인정 시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 갱신 가능
- (비용 보전) SCF 참여를 위해 미국에서 운용·건조하는 비용과 외국에서 운용·건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상 차액을 보전해달라고 참여 신청 시 제안 가능

③ (선정 기준) ▲美 국적자 대상 우선순위(미국인이 주도하는 입찰 참여 주체가 25% 이상 선정되도록) ▲美 연방 정부에 대한 ‘최고가치(best value)’ 제안* ▲국가안보·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역량 보유 여부 등

* 단순 최저가가 아닌 가격▲품질▲기술력▲신뢰성 등 다양한 요소 종합 고려

- 이밖에 ▲군사·안보상 활용성 ▲국제무역 증진 ▲조선소의 경우 적합한 역량 보유 ▲공정·합리적 수준의 건조·운영 비용 등 보장 필요

④ (운영 계약) 선단 소속 모든 선박은 미측과 운영 계약 체결 필요

- (기본 요건) ▲모든 선원은 美 국적자 ▲국제 무역에만 종사*

* 미국 내 연안 무역(coastwise trade)은 계약 종료 후에도 영구 금지

- (국가안보 요건) 동 법에 따라 마련된 ‘비상대비프로그램’에 참여 필요 ➡ ▲비상시 동 프로그램 참여 상업 선박 동원 가능 ▲이 경우 보상 제공
- (중간 목표) 美 정부-입찰 참여 주체 간 구체 ‘중간목표’ 합의 필요
- 중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차액(운영·건조) 보전 및 아래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첨단 기술(AI, 자동화, 추진체, 환경·안전·군사 등) 시험·도입 지원 및 ·상기 ‘중간 목표’ 초과 달성에 따른 추가 지급 포함 가능
- (계약기간) 기본 7년 / 최대 2회 갱신 가능(총 21년)
- (지급·예산) 운영 계약 및 ‘중간 목표’에 따라 지급 / 예산은 신설 예정인 ‘해양안보기금’에서 매년 배정(‘25년 1.5억불→매년 2-3억 증액→’34년 21억불)

- (美 선박 우대) ▲美 국적 선박(vessels of the United States)을 통한 화물 운송에 특혜 제공 검토 ▲정부 화물의 美 국적선 운반 원칙 ▲에너지 수출 시 일정 비율 이상 美 제조 선박 활용 의무화 등

- (美 국적선 인센티브) 해양안보보좌관은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美 국적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납세자들에게 제공할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의회에 보고
- (해외 정비) 해외에서 정비를 받는 美 국적선이 ▲해양안보선단, 전략적상업선단(SCF) 등 동 법이 규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당 선박 소유자가 미국 내에서 정비를 받기 위해 선의의(good faith) 노력을 기울인 경우, 정비비용에 대해 부과하는 종가세(ad volem, 19 USC 1466에 따라 부과) 면제 가능

- 단, FEOC에서의 정비는 면제 불가(아래, 對해외우려국 위험 완화 내용 참조)

- (美 항만 접근) 美 국적선은 대기 중인 외국 선박에 우선하여 美 입항 가능
- (정부 화물) 美 정부가 조달·공급 또는 자금을 지원한 화물은 원칙적으로 100% (현행 50%에서 상향 조정) 美 국적선이 운송
- (에너지 수출) 미국산 에너지 해상 수출 시, 美 제조 선박 활용 비중 증대

- LNG 수출은 '43년까지 15% 이상, 원유 수출은 '35년까지 10% 이상 美 제조 선박으로 해외 수출 의무화

■ (해외우려국 대응) 해외우려국*(또는 해외우려기관, FEOC)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완화

*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 (對中 수입) 中 상품 수입 선박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美 선박(美 건조 + 美 국적 + 美 선원) 사용 의무

* 법 제정 5년 내 1%, 14년 내 10% 이상

- (면제 중단) FEOC에는 美 입항 외국 선박에 대한 톤세제(tonnage taxes)·입항료(light money) 면제 불가

- 美 현행 법률(46 USC 60304)은 외국 정부가 미국에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美 대통령도 해당 국가 선박에 대한 톤세제·입항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바, FEOC에는 이런 면제 未적용

- (정비) 美 국적 선박이 FEOC에서 정비를 받을 경우, 종가세 50%→200% 인상
- (물류플랫폼 리스크 관리) LOGINK 등 中 물류정보플랫폼에 관한 위협 평가 진행

■ (美 산업 기반 조성) ▲미국 내 선박 건조 및 조선소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FEOC 배제) ▲동맹국과의 해양 분야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미국 내 조선산업 투자 지원) 미국 내 ▲외항 선박 신규 건조(SCF와 중복 불가) 또는 ▲조선소 투자 시 자금 지원

- 해양안보기금을 활용하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2억 5천만 불 배정 / ▲외국 건조 시와 차액 ▲조선소 대상 민간 투자 극대화에 필요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결정

- 미국 외부의 조선 시설 또는 **▲FEOC에 대해서는 지원 금지**
- (기타 지원) ▲소규모 조선소 지원을 위해 연간 1억불 배정(~'34년) ▲선박 건조 준비금(Construction Reserve Fund) ▲자본 건설 기금(Capital Construction Fund) 등에 대한 규제 완화 ▲환경 영향 검토 규제도 완화
- (외국 투자 유인) 동 법안 제정 1년 이내에 국무장관은 해양산업 분야 **외국 기업의 美 선박 건조 참여를 제한**하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및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상의 **제한조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
- (세제 혜택) 미국 내 ▲외항 선박 (재)건조·업그레이드(repower)를 위한 투자에 33% 세액공제* ▲조선소 및 핵심 장비부품 제조시설 투자에는 25% 세액공제
 - * 美 회사 보험 가입시 5% 추가 / 美 회사의 표준대로 분류·설계시 2.5% 추가
 - ※ FEOC 배제
- (인력 개발) 선원 대상 ▲학자금 대출 면제 ▲참전용사 수준 교육 지원 제공 ▲연방공무원 채용 시 우대 등 지원 제공 / 채용 캠페인 및 훈련시설 등 강화
- (동맹국 협력) 미국과 방위조약 체결 동맹국 간의 선원, 선박 설계사, 엔지니어 등 인력 교류 프로그램 수립

3. 분석 및 시사점

- (총론) SHIPS Act는 ▲美 국내 조선·해운 산업 부활 ▲해외우려국 관련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양 주도권 확보(해군력 기반 유지, 해상 인프라 접근 보장 등) 및 ▲中 부상 견제(中 의존도 완화 및 해상에서의 영향력 차단) 지향
 - 그간 미국에서 美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쇠퇴가 미국 해양 패권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따라서 국내 산업 부흥 및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던바, SHIPS Act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한 법안
 - 동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SHIPS Act를 통해 ▲美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고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일각에서는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제약하고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존스법이 존속하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 제기
 - 또한, 현재 자원 규모로는 미국산 선박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제한적이며, 현재 미국의 건조 역량 및 인력 부족 고려 시, 美 국적선을 활용한 상품(정부 조달 등) 수송 의무화 등 여러 조항을 단기간 내 충족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
 - 동 법안이 실제로 입법화되거나, 여기에 담긴 여러 정책 구상이 실제 정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시각에서 본 기회 및 도전 요소 분석 필요**

- (기회) 미국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동맹국(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SHIPS Act도 이를 강조하는바, 해양 분야에서 다양한 한미 협력의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전략적 상업 선단(SCF) 참여 ▲美 조선산업 투자 지원 ▲해상 인프라 접근 및 선박 정비 관련 협력 ▲인력 개발 협력 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요인에 주목 필요
- 한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해양 분야 강점을 레버리지 삼아 상기 기회 요인을 잘 포착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기제로 활용

- (도전) 다만, SHIPS Act는 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 방향(美 리쇼어링 유도, 美 선박 사용 유도 등)을 지향하고 있는바, 상기 기회 요인을 살리는 가운데 이러한 도전 요소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도 필요

- 동 법안에 규정된 각종 혜택 수혜 요건도 까다롭게 규정(美 국적 요건, FEOC 배제 등)되어 있는바, 조항별 면밀한 정책적·법적 검토 필요
- 아울러, SHIPS Act의 對中 견제 요소(중국산 수입품의 美 선박 선적 의무화, FEOC 관련 선박 美 항구 입항 시 세금 면제 불가 등)가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 및 미국의 동참 요구 가능성도 주시

■ (전략적 상업 선단) 재원 규모*에 주목, 기회 요소를 발굴하되 상세 요건 검토 필요

* SCF 총 재원은 '25-'34년간 110억불 / '미국 내 조선산업 투자 지원' 명목 재원은 25억불

- FEOC와 관련이 없다면 외국 건조 선박도 SCF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FEOC 규정으로 해외우려국(기관) 선박이 배제되고 동시에 새로운 선박 건조 수요가 창출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단기적으로는 구매·발주 증가 등 기회로 작용 가능
- 신규 수요 창출 외에도 계약에 따라 ▲비용 보전 ▲첨단 기술 도입 등의 혜택도 기대
- SCF에 참여하는 한국 조선업계는 ▲적격(FEOC 무관련성 등)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하여 공급하거나 미국 진출 후 미국 내 건조하는 방법(이때에도 동 선박이 건조되는 잠정기간 동안 한국 건조 선박으로 SCF 참여 가능) 등의 선택지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

- 다만, 본문에서 언급한 SCF 상세 요건 충족 필요

- 예컨대, SCF 참여 선박은 SCF 계약 발효 시점에는 반드시 '美 국적선(vessels of the United States)' 지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

* SHIPS Act는 '美 국적선'을 美 국내법(46 USC 116)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국적 획득도 별도의 美 국내법 체계로 규율

- 아울러 ▲선박 소유·운영자 요건(▲美 국적자 소유▲운영 또는 ▲美 국적자 소유 + 적격자 용선 또는 ▲국방 계약자 소유▲운영) ▲탑승 선원 요건(100% 美 국적자) 등 SCF 운영 계약과 관련된 요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

■ (美 조선산업 투자 지원)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미국 국내 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 단기적으로 對美 투자 증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다만, SCF와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는 점 유의
- 혜택 수혜 대상에서 FEOC가 제외된다는 점 주목

- 일각에서는 재원 규모(10년간 약 25억불) 고려 시 실질적인 對美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혜택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

* 현재 美 조선업의 비효율성과 낮은 전문성으로 선박 건조 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

-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 조선소 건설 비용과 보조금, 세제 혜택, 투자 수익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 (美 해상수송 강화를 위한 협력) SHIPS ACT는 美 해상수송 역량 강화를 위해 동맹국 및 전략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

-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법안을 통해 확정하기보다 행정부가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여러 가지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동 법안이 실제로 발효된다면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美 행정부와 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예컨대, 동 법안은 행정부가 ▲동맹국의 해양 산업 지원 방안 ▲美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바, 추후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美 행정부와 의 적극적 소통 필요

- 특히, 동 법안이 국제 해양 인프라에 대한 접근 보장을 중시하고 민간 선박의 해외 정비(유지·보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협력 기회 발굴 필요

- 인태지역에서의 해양 패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도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바, 다양한 협력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

- 또한, 美 현지 진출 외에도 선박 유지·보수·정비 사업이 우리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바, 동 법안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美 국적 상선이 외국(FEOC 제외)에서 받는 정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한편, SHIPS Act의 직접적 규율 대상은 아니지만, 美 군함 유지·보수·정비 협력도 중요한바, 이를 규율하는 美 국내법(10 U.S.C. 8680)*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미국과의 지속 소통 필요

* 美 국내법(10 U.S.C. 8680)은 미국 내 모항을 둔 美 군함(navay vessel)이 외국에서 유지·보수·정비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항해 중 수리(voyage repairs) 또는 ▲공격에 의한 손상 수리(necessary to correct damage sustained due to hostile actions or interventions) 예외 인정 / 한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DA, '24.12.25 발효)」은 ▲21일 이내의 시정적·예방적 보수(corrective and preventive maintenance)도 외국에서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 추가(단, 상기 3가지 예외적 유지·보수·정비는 모항의 지난 3년 동안의 연평균 작업 총량의 2% 초과 불가)

참고문헌

- 안옥희(2024.11.20.). “트럼프 SOS에 커지는 아메리칸 드림…‘조선 TSMC’ 모델 나올까”. 『한경 Business』 .
- 안옥희(2025.1.8.). “미국 · 인도 조선업 구원투수는 K조선? 이유 있는 문전성시”. 『한경 Business』 .
- 이종윤(2024.12.29.). “美 의회, 권력 전환기에 초당적 ‘조선업 강화법안’ 발의..한국에 기회?”. 『파이낸셜뉴스』 .
- 심재훈(2024.11.19.). “[펙트체크] 트럼프는 ‘한국 조선 실력’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연합뉴스』 .
- 조수빈(2025.1.7.). “트럼프, ‘동맹국’ 협력 재차 강조…조선업계 새 먹거리 ‘MRO’”. 『뉴스핌』 .
- 최용호(2024.5.10.). “미중 조선 · 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경제안보 Review』 24-8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2024.9.25.). “Rebuilding America’s Maritime Strength with Senator Kelly and Congressman Waltz”. CSIS Transcript.
- Colin Grabow(2022.8.16.) "The Self-Imposed Blockade: Evaluating the Impact of Buy American Laws on U.S. National Security". Policy Analysis, 933. CATO Institute.
- Colin Grabow(2024.7.31.). “Jones Act Is Costly, Ineffective, Unfair”. Commentary. CATO Institute.
- Daniel Michaels(2024.12.29.). “Fear That China Ruyles the Waves Jolts U.S. to Pursue Maritime Revival”. The Wall Street Journal.
- Jason Asenso(2024.12.20.). “Lawmakers introduce bill to revitalize U.S. maritime trade, shipbuilding”. Inside U.S. Trade.
- John Garamendi(2024.12.19.). “Garamendi, Kelly, Senators Young and Kelly, Introduce SHIPS for America Act to Revitalize US Shipbuilding and Commercial Maritime Industries”. Congressman John Garamendi Press Release.
- Justin Katz(2024.12.19.). “Lawmakers introduce bipartisan SHIPS Act to boost commercial shipping”. Breaking Defense.
- Mallory Shelbourne(2024.12.19.). “New SHIPS Act Legislation Aims to Revamp U.S. Shipbuilding Industry”. USNI News. U.S. Naval Institute.

저자 소개

최용호 | yhochoi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경제, 기술패권경쟁, 미국 국내 정치와 경제안보정책의 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일 기술패권경쟁과 미국의 경제적 대응: 민군겸용 기술을 둘러싼 안보 논쟁과 통상마찰” 이승주 편. 『미중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2020),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 『경제안보리뷰』 (23-7호), “틱톡 규제 동향 분석: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연계 가능성” 『경제안보리뷰』 (23-16호, 최용호 · 박지연), “미중 조선 · 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경제안보리뷰』 (24-8호),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 ” 『경제안보리뷰』 (24-19호) 등이 있다.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전문관 · 이재원 선임전문관

1. 개요

- 美 하원 중국특위* 산하 ‘핵심광물 정책작업반(Critical Minerals Policy Working Group)’은 ‘24.6월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핵심광물 高의존을 완화하고 ▲공급망 회복력 ▲지속가능성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 The United States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Select Committee on the CCP) / 美-中 간 전략 경쟁 관련 정책을 조사, 권고하기 위해 '23.1월 설립

- ‘24.12.11일 핵심광물 정책작업반은 핵심광물 확보 관련 6가지 정책 제언이 담긴 최종 보고서 「Creating Resilient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발표
 - 보고서는 6차례의 산·학·관 전문가 회의*를 거쳐 3개의 초당적 법안 발의를 포함한 6가지 정책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 해소 방안을 논의

* (회의별 의제) ①배터리 소재 및 희토류 자석의 국가안보·경제안보 영향 ②美 핵심광물 수입 의존 ③핵심광물·희토류 산업에서의 강제노동 및 지속가능성 ④핵심광물의 재활용, 국내 회수 및 비전통 공급원 ⑤美 핵심광물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⑥핵심광물과 방위산업

2. 美 핵심광물 정책 제언 및 주요 입법안

- 「지구과학 및 협력 강화법(Earth Sciences and Cooperation Enhancement Act)」 제안
 -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에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한 동맹국 및 핵심광물 공급국과의 협력을 강화
 - ▲지질도 작성(geological mapping) ▲광물 자원 평가 ▲데이터 분석 ▲환경 및 작업 표준 등에 관해 타국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증진을 장려
 - 2025 회계연도에 3백만불의 예산을 배정하여 핵심광물 MOU 체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데이터 수집 및 파트너국과의 데이터 공유에 활용

■ 「수출통제개혁법(Export Reform Control Act of 2018)」 개정 제안

- 핵심광물을 포함하는 재활용 가능 소재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역내 재활용 및 회수를 촉진하여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
- 블랙매스(black mass,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소재) 및 스와프(swarf, 자석 제조 부산물)의 수출·재수출·국내이전에 대한 수출허가를 요구하여 중국 등 적대국의 최종 사용을 방지
- 재활용 가능 소재의 수출통제를 통해 적대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을 완화하고 미국 내 배터리 재활용 및 처리 능력을 증진

■ 「핵심광물 인력 강화법(Critical Minerals Workforce Enhancement Act)」 제안

- 교육 및 이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제련·가공·재활용 인력을 강화
- 핵심광물 분야 외국인 엔지니어의 美 기업 및 정부기관 내 근무(풀타임) 허용을 통해 미국의 핵심광물 생산·재활용 부문 전문성 확충
- 「1961년 교육문화 상호교류법」을 개정하여 미국과 타국 기관과의 ▲교육 파트너십▲연구 협력 ▲공동 학위 프로그램 등 핵심광물 분야 국제 교육 교류를 촉진

■ 미국 및 동맹국의 핵심광물 생산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화 정책 모색

- ▲연방기금 금리 수준 대출 지원 ▲글로벌 수급 모니터링 및 미국·동맹국 내 핵심광물 생산 임계량 설정 등의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검토
- 바이든 행정부의 광물 사업 보조금(10억불 이상 既교부) 제도와 연계·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핵심광물 가격 안정화 정책을 모색

■ 既제기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법안의 초당적 추진 지원

※ 아래 모든 법안은 발의만 된 상태로 회기 종료('25.1.3)에 따라 폐기되었으나, 발의의원 전원이 차기 의회에서 임기를 유지함에 따라 추가 입법 가능성 존재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既제기 법안 목록

법안번호	법안명	내용
	발의일 / 발의의원	
H.R. 2685	광업학교법(Mining Schools Act of 2023)	에너지부에 국내 광업 교육 및 인력 개발 강화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지시
	'23.4.18. / Burgess Owens(공화, 유타)	
H.R. 2849	희토류 자석 생산세액공제법(Rare Earth Magnet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 Act of 2023)	희토류 자석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23.4.25. / Guy Reschenthaler(공화, 펜실베이니아)	

법안번호	법안명	내용
	발의일 / 발의의원	
H.R. 4217	전자폐기물 수출 및 재활용 보안법(Secure E-Waste Export and Recycling Act; SEERA)	핵심광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폐기물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23.6.20 / Adriano Espaillat(민주, 뉴욕)	
H.R. 7662	핵심광물안보법(Critical Minerals Security Act)	글로벌 핵심광물 자원 및 첨단 채굴·제련·가공 기술에 대한 전략 요구
	‘24.3.13. / Chrissy Houlahan(민주, 펜실베이니아) ※ 공동발의 : Michael Waltz(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H.R. 8187	첨단 청정에너지 핵심 소재 투명성 및 보고법(Critical Material Transparency and Reporting in Advanced Clean Energy Act of 2024; TRACE Act)	에너지부에 핵심광물 공급망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식별 시스템 구현 지시
	‘24.4.30. / Paul Tonko(민주, 뉴욕)	
S. 4712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법(Global Strategy for Securing Critical Minerals Act of 2024)	핵심광물 파트너십에 대한 외교적·재정적 지원 증대(국무부 역할 강화) - 국무부에 핵심광물/재료 사업을 인증하는 역할 부여(Blue Dot Network* 활용 등)
	‘24.7.11. / Mark Warner(민주, 버지니아) ※ 공동발의 : Marco Rubio(국무장관 내정자) 등	
S. 5030	국가핵심광물위원회법(National Critical Minerals Council Act)	국가 핵심광물 전략 조정을 위해 대통령실 내에 국가핵심광물위원회 설립
	‘24.9.12. / John Hickenlooper(민주, 콜로라도)	
S. 5039	혁신발굴법(Unearth Innovation Act)	에너지부 내에 광물 및 광업 혁신 프로그램 설립
	‘24.9.12. / John Hickenlooper(민주, 콜로라도)	

자료 : 핵심광물 정책작업반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 ‘19년 미국, 호주, 일본이 출범시킨 국제적 평가·인증체계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양질의 투자 및 지속가능성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모색

■ 차기 의회(119회기, ‘25.1.3~‘27.1.3)에서 초당적 동력 유지

-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 ▲국내 생산 부족 ▲對中 의존 등의 주요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부, 업계 등과 지속 협력 추진

3. 평가 및 전망

- ‘25.1.3. 美 하원이 중국특위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對中 견제 측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관련 초당적 입법안들이 추동력을 가지고 차기 의회에서도 지속될 전망

■ 美 신정부는 '對中 의존 완화' 기조 下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동맹, 우호국간 협력을 지속 모색할 가능성

- 트럼프 1기에서 ERGI(Energy Resource Governance Initiative, '19.6. 출범)를 통해 우호국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자 협력 체제 구축을 도모한바, 신정부에서도 핵심광물 분야 對中 견제를 위한 대외협력 기조가 일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도 ERGI와 유사하게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를 출범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동맹국과 조율된 기존의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공급망 협력을 지속 도모할 가능성

■ 미국 내 광산 개발에 대한 지원·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美 광산 개발 투자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의 화석연료 촉진 정책과 함께 美 내 광산업이 적극 육성될 전망으로, 특히 원자력·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우라늄, 안티모니 등의 개발 수요 확대 예상
-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 및 자국 내 광물 생산 확대 기조에 따라 ▲채굴 허가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 광산 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
- * 미국은 최근 ▲아이다호주 안티모니 및 금 광산 채굴 인가('25.1.3.) ▲네바다주 리튬 광산개발 승인('24.10.24., 美 내 리튬 광산개발 최초 승인) 등 자국 내 광물 채굴 허가 확대
- 최근 미국 내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초당적으로 높아지면서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의 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 필요한 안티모니·텅스텐 등 핵심광물 협력 범위 확대 가능

참고문헌

- Select Committee on the CCP(2024.12.11.), “Critical Minerals Policy Working Group Final Report,” <http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media/policy-recommendations/critical-minerals-policy-working-group-final-report>.
- US Department of State, “Energy Resource Governance Initiative(ERGI) Fact Sheet,” Bureau of Energy Resources(ENR), <https://state.gov/wp-content/uploads/2019/06/Energy-Resource-Governance-Initiative-ERGI-Fact>

저자 소개

황지현 | jhhwang24@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 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경제안보리뷰 18호, 2024),” 혁신 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2)”이 있다.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선임전문관

1. 개요

- '24.12. 美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Robert D. Atkinson) 회장은 동맹국이 트럼프 관세에 직면할 위험 수준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원제: Which US allies are most likely to face Trump tariffs—and how can they avoid the wrath of an “America First” Doctrine?

-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자국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며, 미국의 선의와 리더십으로 이득을 얻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
- ITIF는 동맹국이 처한 미국의 관세 위협의 정도를 ▲국방비 ▲對미 무역수지 ▲對미 규제 ▲對중 강경책을 지표화한 '트럼프 위험 지표(Trump Risk Index)'로 제시

2. 전통적인 미국 외교정책(America Second)의 역사

- 냉전기 미국은 소련 봉쇄라는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경제적 이익을 동맹에 양보해 왔으며, 탈냉전기에도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정책 유지

- 美는 소련 봉쇄를 위해 동맹에 ▲우호적 무역 협상 ▲수입 관세 완화▲대외 원조 및 기술 이전 ▲美 기업의 동맹국 이전 장려를 추진

- 美 정부 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려는 의견(▲무역투자정책위원회 ▲상무부▲무역대표부 등)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이익(▲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을 추구

- 탈냉전기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안보 이익과 동등하게 다루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면서 백악관 내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에 상응하는 국가경제회의(National Economic Council, NEC)를 설립

- 그러나 '90년대 일시적인 미국 경제 호황으로 그 노력이 퇴색하였으며, '01년 9.11 테러로 경제보다 지정학과 국가안보를 더 우선시하는 기존 정책을 강화

- 오바마 행정부는 지정학 문제(북한·이란·대만 등)를 다루는 과정에서 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민항기 기술 협력 등을 제공/그 결과 中 COMAC이 성장하고 美 BOEING은 쇠락

■ **안보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한 결과가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美 경제가 쇠퇴**

- '20년 기준 中이 7개 첨단산업(▲컴퓨터 · 전자 ▲화학 ▲기계 · 장비 ▲자동차 · 트럭 ▲금속 자재 ▲금속 가공물 ▲전자 장비)를 선도하지만, 美는 3개 첨단산업(▲정보통신서비스 ▲의약품 ▲항공 · 철도 · 해상) 선도에 그치는 상황

※ '23. 12. ITIF는 10개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생산량, 시장 점유율, 세계 GDP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한 해밀턴 지표 (Hamilton Index of Advanced-Technology Performance)를 발표

3.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제주의자(Globalist)를 배제하고 對中 강경책을 펼치면서 동맹에게도 동일한 입장을 요구할 전망**

-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부터 美 외교정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보면서 미국인의 이익과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
 - 다만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 국제주의자(Globalist)는 트럼프의 노력에 적극 반대
- 트럼프 2기에서는 對中 강경파인 마크로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등이 포진하면서 국제주의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
 - ▲무역수지 균형 추진 ▲제조업 초강대국 도약 등 '2024 공화당 정강정책(2024 GOP Platform)'도 미국 우선주의의 근거로 작용
 - 또한 트럼프는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동맹에도 동일한 입장을 기대 하였으며, 국방에 과소 투자하고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동맹을 비난

■ **미국과 함께할 국가(with us)와 반대할 국가(against us)를 구분할 기준으로 ▲국방비 ▲對미 무역수지 ▲對미 규제 ▲對中 강경책을 제안**

-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점수가 낮을수록 관세 등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멕시코, 태국 등이 취약하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호주 등은 안전하다고 평가
- 한국의 트럼프 리스크 종합점수는 보통(0.16)으로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2위로 나타났으며 (평균=0), 부문별로는 국방비 점수 高(1.12), 무역수지 점수 低(-0.41), 對미 규제 점수 평균 근접(-0.10), 對中 강경책 低(-0.48)로 평가
 - 한국의 주요 교역국('24년 11월 누계 기준)인 독일(9위), 멕시코(14위), 캐나다(16위), 태국(18위), 필리핀(19위) 등이 위험군에 포함

ITIF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의 구성

4개 부문	구성 요소
①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
② 무역수지	GDP 대비 무역수지
③ 對미 규제 (무역장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美 무역대표부 감시대상국 목록(USTR Watch List) - 의약품 가격 통제의 정도 - 미국 대비 처방약의 가격 수준('18년 1인당 GDP 기준) -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17년) -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17년) - 데이터 관련 규제 정책의 수 - 각국의 디지털 시장 관련 반독점법 여부(EU 디지털시장법 등) - 디지털세 여부
④ 對중 강경책	각국의 대중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

자료: ITIF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ITIF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순위

국가명*	종합점수**	국방비***	무역수지	對미 규제	對중 강경책
멕시코	-4.12	-1.91	-2.07	0.34	-0.48
태국	-3.98	-1.14	-1.89	-0.47	-0.48
슬로베니아	-2.48	-0.97	-1.07	0.04	-0.48
오스트리아	-2.42	-1.69	-0.37	0.11	-0.48
캐나다	-1.98	-0.86	-0.52	-0.11	-0.48
뉴질랜드	-1.92	-1.07	0.25	0.27	-1.37
헝가리	-1.78	0.16	-0.65	0.09	-1.37
터키	-1.58	0.13	0.37	-0.71	-1.37
슬로바키아	-1.57	0.01	-1.32	0.23	-0.48
룩셈부르크	-1.53	-0.97	0.97	-0.15	-1.37
스페인	-1.34	-0.99	0.43	-0.3	-0.48
포르투갈	-1.08	-0.61	-0.03	0.05	-0.48
몬테네그로	-0.78	0.03	0.39	0.16	-1.37
알바니아	-0.71	0.05	0.52	0.09	-1.37
이탈리아	-0.71	-0.70	-0.16	-0.27	0.41
독일	-0.69	0.17	-0.14	-0.25	-0.48

국가명*	종합점수**	국방비***	무역수지	對미 규제	對중 강경책
필리핀	-0.40	-1.03	0.13	0.09	0.41
불가리아	-0.29	0.26	0.08	-0.14	-0.48
크로아티아	-0.16	-0.26	0.43	0.15	-0.48
영국	0.06	0.46	0.48	-0.40	-0.48
노르웨이	0.13	0.28	0.33	0.00	-0.48
대한민국	0.16	1.12	-0.41	-0.07	-0.48
프랑스	0.2	0.09	0.27	-0.56	0.41
북마케도니아	0.32	0.31	0.00	0.48	-0.48
일본	0.36	-1.10	-0.09	0.25	1.30
스웨덴	0.61	0.20	-0.09	0.08	0.41
벨기에	0.63	-0.96	1.11	0.06	0.41
루마니아	0.94	0.35	0.17	0.00	0.41
핀란드	1.16	0.57	-0.05	0.22	0.41
그리스	1.22	1.50	0.36	-0.15	-0.48
대만	1.33	0.24	-1.44	0.34	2.20
덴마크	1.42	0.52	-0.06	-0.34	1.30
체코	1.65	0.14	0.14	0.06	1.30
네덜란드	2.09	0.08	1.49	0.12	0.41
호주	2.88	-0.10	0.69	0.10	2.20
라트비아	2.88	1.59	0.66	0.22	0.41
폴란드	3.56	2.93	0.31	-0.10	0.41
에스토니아	3.6	1.98	0.11	0.21	1.30
리투아니아	4.22	1.18	0.69	0.16	2.20

*조사 대상은 CSIS의 연구(Victor Cha, The Trump Prism of Allies)에서 선정한 NATO 회원국 및 아시아 동맹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베트남 등 여타 아세안 국가, 인도, 중동 등은 미포함

**종합점수가 낮을수록 관세 위험 증가, 종합점수 산정 시 가중치는 국방비=1, 무역수지=0.75, 對미 규제=0.75, 對중 강경책=1로 책정, 컬러코딩은 요약 정리시 임의 추가

***국방비는 트럼프 및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발언을 토대로 GDP 대비 3%를 기준으로 점수화

4. ITIF 보고서의 제언

- 동맹국에게 미국에 대한 무임승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방비 인상 ▲對중 강경책 도입 ▲美 기업에 대한 장벽 철폐 ▲무역수지 개선을 제안
 - (對중 강경책) 중국發 외국인투자 제한, 상업 부문의 정보 공유(counterintelligence), 중국의 전랑외교 및 여타 강압 대항, 美 수출통제 동참
 - (美 기업에 대한 장벽 철폐) EU 디지털시장법을 본뜬 디지털세 및 반독점 규제 등 철폐, 지식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탈취 단속, 의약품 환급률 확대(약가 인상),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보장
 - (무역수지 개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등하게 설정하고, 동맹국이 자국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장려, 수출을 위한 보조금 중단, 환율 조작 중단
- 다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미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의 압력에 따른 강달러 정책에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공급망, 미국 미국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 美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2024년) 및 Fact Sheet 발표 (12.19)

- (주요 내용)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4년간의 공급망 강화 노력 평가
 - (인프라·제조업 투자) 반도체과학법, IRA 등을 통해 핵심 산업*에 대한 1조불 이상의 민간부문 투자 유치
 - *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전 세계 첨단반도체 제조의 30% 미국 점유 예상 / IRA 청정에너지 조항으로 '30년까지 세계 리튬 수요의 20% 이상을 중국 외로부터 공급 가능
 - (비시장 정책·관행 대응) 美 핵심 부문 공급망 보호를 위한 관세 인상
 - ※ 비시장 관행 대응을 위한 조달·공급망 투명성·시장표준 등에 있어 포괄적 추가 조치 제시
 - (동맹·파트너국 협력) ▲`21.10월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관련 정상회의 개최 ▲IPEF 등을 통한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 ※ 이외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 ▲한미 공급망·통상대화(SCCD) ▲첨단배터리 공급망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 및 동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파트너국(캐, 호, 일, 한, EU, 영, 아프리카 남부 일부 국가)간 협력 강화 언급
- (향후 과제)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중국(PRC)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통한 시장 왜곡 및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장악 등 언급

조선, 미국 美 의회 조선업 관련 법안 발의 동향

■ 美 의회 양당 의원 4명, 'SHIPS For America Act' 발의 (12.19)

- (목적) 국가 경제안보 강화 및 美 조선업 부흥을 위한 포괄적 지원
 - 美·中 경쟁 환경 下, 미 조선업 역량 저하 우려가 입법 배경으로 작용
- (주요 내용) ▲총괄 기관·기금 등 제도 신설 ▲전략적 상업 선단 창설 ▲對中 견제(FEOC에서 美 선박 정비시 세율 인상) ▲자국 선박 우대(美 국적선 화물 운송시 인센티브 제공) ▲국내투자 유치(세액공제 및 자금지원) 등
- (전망) Waltz 안보보좌관 내정자 주도 / 차기 회기 재추진 예상

※ 美 선박 투자·조선소 건설 세액공제 등 지원 내용이 포함되나, 국내 업계 수혜 가능성 모색 필요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 24.12.10.~12.31.)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표로 정리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12.11.	[경제]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12.11~12)
	12.12.	[자동차] 11월 中 자동차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344만대로 월간 생산량 역대 최고치 경신(경제일보, 12.12)
	12.13.	[요소] '24.10월 한국의 요소 대중 수입량, 2,217톤으로 전월 대비 71.8% 감소
	12.12.	[경제]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서울, 12.12.) :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무역·투자 활성화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12.19.	[물류정보] 中 데이터기술 분야 첫 중앙 국유기업 '중국수련물류정보' 설립(12.19) : 국가 단위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목표
	12.28.	[관세]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 '25년 1월1일부터 일부 상품 수입 관세율 및 세목 조정 : 재생 구리·알루미늄 등 관세 인하, 배터리 분리막·염화비닐 등 관세 인상(KITA)
	12.30.	[자동차] 재무부,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정부 조달 비율 요구사항 발표: 신규 구매하는 공무용 차량의 30%를 신에너지 차량으로 구매토록 의무화(KITA)
미국	12.6.	[틱톡] 워싱턴DC 연방 순회 항소법원, 틱톡 금지 합헌 판결 : 틱톡 강제매각법 위헌 확인소송 기각(WP)
	12.6.	[핵심광물] 상원, 무역대표부(USTR)에 신규 핵심광물 부문 협정 관련 권한 부여 법안(통칭 STRATEGIC Minerals 법안) 초당적 발의
	12.7.	[드론]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드론대응법 포함: 드론 관련 통신·비디오 감시 장비에 대해 국가 안보 위험 평가 등
	12.10.	[환경] 트럼프 당선인, 미국내 투자시 환경규제 허가절차 등 가속화 발표
	12.11.	[관세] 무역대표부(USTR), 중국산 텅스텐·폴리실리콘 등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 조치 발표: 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50%로 두 배 인상 / 텅스텐도 0→25% 인상
	12.11.	[핵심광물] 美 하원 중국특위 산하 핵심광물 작업반,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내 독점적 지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보고서* 발표(12.11) : ▲「지구과학 및 협력 강화 법안」 채택 ▲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 개정 등 6가지 제언 발표 * Creating Resilient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12.12.	[경제적강압] 백악관, 경제적 강압 대응 TF 설치 정책각서* 발표 : 중국 등 우려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NSC 산하에 TF 설립 * Memorandum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Task Force

국가	일자	내용
미국	12.13.	[과학기술] 국무부,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및 5년 연장 의정서 서명 발표 :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핵심·신흥 기술은 협력 대상에서 제외
	12.18.	[국방] FY 2025 국방수권법(NDAA) 양원 합의안, 하원(12.11) 및 상원(12.18) 통과
	12.19.	[반도체] 상무부, 엔비디아에 AI 칩 중국 유출 과정 조사 요청: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스 등 파트너 업체에 동남아 현장 점검 요청
	12.19.	[조선] Mark Kelly 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 4인, 「美 안보·번영을 위한 선박건조 및 항구기반시설법안(SHIPS for America Act)」 상·하원 발의
	12.19.	[공급망] 美 백악관, 2021-2024년 공급망 검토 보고서 발표 : ▲4년간의 공급망 강화 노력 및 향후 과제 ▲비시장 정책·관행에 대한 포괄적 대응 ▲공급망 행정명령 14017호에 따른 10대 핵심산업·분야별 보고서 등
	12.19.	[온실가스] 美 백악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 2035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1-66% 감축 목표
	12.18.	[환경] 美 환경청(EPA), 캘리포니아주의 '35년 限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규제 예외승인 (12.18) : NYT 등 다수 언론, 트럼프 당선인의 同규제 예외 철회 예상
	12.18.	[국방] FY 2025 국방수권법(NDAA) 양원 합의안, 하원(12.11) 및 상원(12.18) 통과
	12.23.	[반도체] 美 USTR, 중국의 반도체칩 산업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 착수 : 中 상무부, 동 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반대 입장 표명
	12.29.	[틱톡] 트럼프 당선인,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발효 중단 요청
12.30.	[사이버] 재무부 전산망 해킹 관련 중 정부 배후 해커 의혹 제기(CNN)	
일본	12.16.	[광물] 日 경산성, 광물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지원(일간공업신문, 12.13) : '24년 추경예산 구리·희소금속 신규 공급원 확보에 3년간 1,597억엔 편성 등
	12.18.	[연료전지] 경산성, 자국 내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혼다·도요타 대상 설비 투자 보조금 각각 147억엔 및 112억엔 지원 발표
	12.18.	[반도체] 키옥시아, 도쿄증시 프라임시장에 상장
	12.19.	[반도체] 라피더스·IBM, 2나노 반도체 핵심기술 공동개발
	12.19.	[반도체] 후지필름, 한국에 반도체 재료 신시설 건설 계획 : 천안시 거점의 생산능력 증강으로 2027년 봄 양산 시작 목표
	12.19.	[배터리] 혼다, 전고체배터리 '25.1월부터 실증생산 발표(11.21) : 기존 EV 배터리 대비 향상 거리 2배 향상 및 배터리 비용 25% 감축
	12.19.	[AI] 日 정부, 틈새 분야에 특화된 AI 개발 민간공동 추진 계획
12.25.	[경제안보] 日 내각부, 중요토지의 외국인 취득상황 공표(12.23)	
EU	12.12.	[핵심광물]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토류 심층회의 개최(브뤼셀) : MSP 의장국(한국) 주재
	12.13.	[노동] 집행위,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규정 발효 : '27.12.14.부터 적용 예정
	12.16.	[대러제재] EU, 제15차 대러제재 패키지 채택(12.16) : (주요 내용) ▲개인·단체 제재 지정 및 ▲제재 우회 금지 등

국가	일자	내용
EU	12.17.	[철강] EU 집행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실효성 검토 개시(12.17) : (조사 대상품목) 現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인 26개 철강 제품군
러시아	12.20.	[경제안보] 러 통신규제당국 Roskomnadzor, 카카오톡·왓츠앱 등 12개 메신저 서비스에 정보제공 의무 부과(Kommersant, 12.20)
네덜란드	12.18.	[반도체] ASML,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日 기업(라피더스)에 첫 수출(FD) *라피더스는 日 기업 최초로 EUV 장비 도입
독일	12.14.	[자동차] 폭스바겐, 중국 생산 공장 매각 추진(Wirtschaftswoche) : 中 난징 공장 매각 결정 및 26개 공장 추가 매각 가능성
	12.14.	[방산] 獨 방산기업 라인메탈, 美 드론 기술 기업 오테리온과 드론용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 예정(Tagesspiegel)
	12.21.	[리튬] 獨 니더작센주, 에쓰社에 리튬 탐사 허가 부여
	12.21.	[방산] 獨 올해 무기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Tagesschau)
	12.31.	[경제] 독일소매업협회(HDE), 크리스마스 시즌 경제 효과 기대 이하로 전망
	12.31.	[자동차] 폭스바겐, 노조와 협상 합의 도달(Spiegel) : ▲독일 내 공장 유지 ▲2030년까지 3만 5천 개 일자리 감축 등 합의
12.31.	[통신] EU IRIS 위성 네트워크 핵심 인프라, 독일 NRW주에 구축(BMKW)	
멕시코	12.25.	[USMCA] 미-멕시코 간 유전자조작 옥수수 패널 절차서 멕시코 정부 패소(12.20)
칠레	12.13.	[리튬] 칠레 마리쿤가 리튬 염호 개발 파트너사 Short-list* 선정(12.13, Diario Financiero) *호주 광산기업 Rio Tinto, 韓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中 Tianji, BYD, CATL 등 포함
호주	12.20.	[환경]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정 체결(12.20)
인도네시아	12.16.	[반도체] 인도네시아 정부,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 표명(12.11) : 반도체 산업 개발 관련 ▲인프라 ▲기술인력 양성 ▲공급망 ▲지원 환경 강화 예정
	12.28.	[니켈]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 인니, 내년 니켈 채굴량 올해 절반 수준 1억5천만t으로 축소 검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중국	12.20.	[재생에너지] 中 국가에너지국, 재생에너지법 개정 가속화(12.2) : ▲재생에너지 목표제도 실시 ▲재생에너지 전력소비책임 명확화 등 추진
일본	12.19.	[원자력] 일본-프랑스 고속로 개발 협력 합의(11.20)
	12.19.	[에너지] 日 경산성-페루 에너지광산부, 에너지 이행 관련 협력각서 체결(11.17)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수소·암모니아 등 협력 추진
	12.19.	[풍력] 日 JERA-英 BP, 해상풍력사업 통합

국가	일자	내용
EU	12.31.	[가스] 러-우 가스관 계약 만료 따른 對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독일	12.14.	[재생에너지] 獨 올해 총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54%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Spiegel) :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충당
	12.14.	[에너지] 獨 바이에른주-체코 간 전략적 에너지파트너십 체결(12.12)
독일	12.31.	[전력] 獨 연방네트워크청, '24년 전력선 건설 승인규모 역대 최대(Tagesspiegel) : '24년 약 1,400km 전력선 건설 승인
	12.21.	[재생에너지] 스위스연방철도(SBB), '25.1월부터 100% 재생에너지원으로 운영 (Swissinfo, 12.17)
루마니아	12.19.	[원자력] 한수원 컨소시엄, 루마니아 체르나보더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수주(12.19)
	12.21.	[재생에너지] 루마니아 에너지부, 1.5GWh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 확보(12.17) : 11개 태양광 발전 사업자 및 10개 육상 풍력 사업자 대상 청정에너지 생산 지원 계약 체결
호주	12.18.	[원자력] 호주 연방 제1야당(자유국민연합당), 원전 건설 관련 비용 분석 보고서 공개 (12.13) : 원전 포함 전력시스템 구축 시 재생에너지·축전 중심 전력시스템 대비 비용 절감 가능 전망
베트남	12.17.	[전력] 베트남 전력법 이행계획 발표(12.11) : 전력법 이행에 따른 시행령 5건, 총리 결정 2건, 시행규칙 5건 발표 등
몰도바	12.12.	[에너지] 몰도바 정부, 에너지 부문 비상상태 선포 및 에너지부 장관 해임(12.5) : 몰 에너지부와 러 Gazprom社 간 가스 공급 협상 결렬로 전력 공급 중단 가능성 등 위기 상황 발생
카타르	12.23.	[에너지] 에너지부 장관, EU 공급망실사지침 과징금 부과시 EU에 가스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